

WCU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(이하 “WCU사업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WCU사업”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분야 연구 추진과 대학의 교육·연구분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(World Class University) 육성사업을 말한다.
2. “사업단”이라 함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규정(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07호)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1 과제(학과 개설 지원 과제), 유형2 과제(개별학자 초빙 지원 과제), 유형3 과제(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과제)를 수행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WCU사업에 선정된 본교 소속 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 2 장 WCU사업 운영위원회

제4조(구성) ① WCU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WCU사업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된다.

③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전략기획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기획조정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WCU사업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2. WCU사업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WCU 사업단장 및 참여교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WCU사업 참여 해외학자의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
5. 관련 규정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7조(실무위원회) ① WCU사업의 효율적인 연구·학사행정 지원과 운영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전략기획팀장, 교무팀장, 교원인사팀장, 연구지원팀장, 학생지원팀장, 총괄지원팀장, 국제교류팀장으로 구성되며, 회의는 전략기획팀장이 주재한다.

제 3 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

제8조(사업단의 구성) ① 각 사업단은 WCU사업 구성요건에 준하는 사업단장, 참여교수, 전담직원, 연

구원으로 구성된다.

② 연구원은 WCU사업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사과정/석사과정/박사과정 학생, 전임연구원, 연구교수 등을 의미한다.

제9조(사업단장) ① 사업단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탁월한 연구경력과 경영관리 능력을 가진 자로서 WCU사업 사업단장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

② 사업단장은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사업단장(유형3 과제 책임자 제외)은 연간 5억원 이상의 국책사업 연구책임자(BK21 사업단장 제외)를 겸할 수 없다. 다만, 사업선정 후 6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0조(사업단장의 권한)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
2. 사업의 총괄 수행
3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
4.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·확산
5. 국내 교수 및 해외학자에 대한 지도·감독
6. 실적이 저조한 국내교수 및 해외학자의 교체에 대한 요청
7.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

제 4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제11조(연구비중앙관리) ① 모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이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할 수 없다.

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,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한다.

제12조(간접비 및 부대경비) WCU사업 간접비 및 부대경비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규정과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.

제 5 장 자체평가 및 연구결과의 소유

제13조(자체평가) ① WCU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WCU사업평가위원회, 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.

② 각 사업단은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와 자체평가를 수행함으로써 WCU사업에 만전을 기하며, 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WCU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WCU사업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각 사업단에 환류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사업단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 운영 및 참여교수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) ① WCU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참여하여 수행된 연구실적(논문 등)에 대하여는 당해 연구자가 WCU사업의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.

② 사업단에 속한 해외학자 등의 연구자는 동 사업으로부터 얻은 연구성과를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, 연구의 성과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 등 모든 유무형의 권리는 본교가 소유한다.

③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6 장 보 칙

제15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 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